


등록번호	안전특별점검단-2421	주무관	안전점검1팀장	안전특별점검단장	안전관리실장	
등록일자	2021. 03. 09.				전결 2021. 3. 9.	
결재일자	2021. 03. 09.	김종복	정무순	강신호	박원석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협 조				
						

2021년도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안 전 관 리 실
(안전특별점검단)

목 차

I. 추진배경 및 관련근거	1
II. 추진실적 및 결과 분석	2
III. 2021년 추진목표 및 방향	4
IV. 세부 추진계획	5
① 안전관리계획 수립	5
② 안전관리계획 심의	6
③ 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 실시	7
④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강화	9
V. 행정사항	10
VI.향후계획	10
【 붙임자료 】	
1. '21년 월별 지역축제 계획(예정)	12
2.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축제)	13
3. 지역축제 안전관리 분기별 추진실적(서식)	17
4. 지역축제 안전사고 발생보고(서식)	18
5.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9
6. 분야별 안전점검 세부 체크리스트	22

2021년도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

◇ 현장 예방 중심의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안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道民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I

추진배경 및 관련근거

□ 추진배경

- 2009년 2월 화왕산 억새태우기 지역축제 사고발생으로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 수립 및 시달
 - *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2009년 4월 8일)
- 계속 증가하는 지역축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 위해 요소 제거하는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도모 필요
 - * (18년) 매뉴얼 개정(보험가입, 심의제도 도입) (19년) 재난안전법 개정(계획 수립·제출 민간 적용)
 - (20년) 코로나19 축제분야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마련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지역축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준수
 - 감염병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축제 연기 또는 축소(비대면 온라인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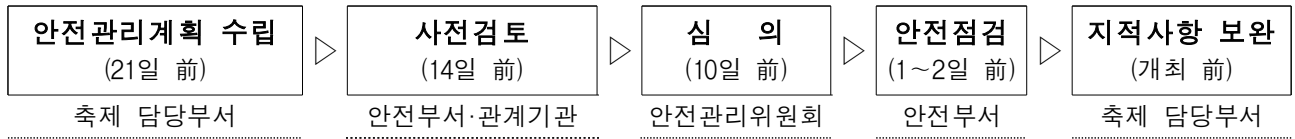
□ 관련근거

-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 :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 중앙, 지자체, 민간관리주체*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민간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제출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의무 부여(2020.06.04.시행)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 :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 대규모 축제 :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 예상되는 축제
 - 고위험 축제 : 산·수면에서 개최,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역축제 안전관리 조항 개정(2019.12.3.)
 - 모든 축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보험 가입, 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 제출 의무 신설

□ 안전관리체계



II

추진 실적 및 결과 분석

□ 2020년 추진실적

○ 관리대상 지역축제 : 327개소(공공 156, 민간 171)

< 도내 2020년도 계절별 지역축제 계획 >

계	겨울	봄(106개소)			여름(36개소)			가을(165개소)			겨울	일정 미정	해넘이/해맞이	비고
	1월	2~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27개소	1	-	35	71	12	4	20	78	82	5	2	16	1	

○ 시·군 자체 총괄 추진실적 : 30개소(道, 시·군 합동안전점검 미 실시)

안전점검	총 관람객수(천명)	자체 안전관리				
		전체축제	계획수립	심의	합동점검	보험가입
30개소	64.6	30(개소)(9%)	26(8%)	10(3%)	22(7%)	22(7%)

* 코로나19 감염병 지속·확산으로 시·군 지역축제가 축소되거나 취소됨(일부 시·군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대체됨)

○ 주요 지적사항

- ▷ (방역) 코로나19 감염병 단계 격상으로 방역지침 준수 및 행동요령 철저 보완
- ▷ (가설구조물) 무대, 가설건축(구조) 시설물 안전성 확보, 시설기준 미 적합
- ▷ (소방) 위기상황 매뉴얼 및 음향·무대시설, 야영장 내 소화기 비치 철저 등
- ▷ (가스) 위험물(폭죽) 사용·소지 시 가능한 사고 대비 및 텐트속 가스 사용 주의
- ▷ (전기) 관객 발걸림 방지용 전선 정리 및 보호덮개·누전차단기 미설치
- ▷ (안전관리) 안전관리요원 행사장 배치상태 보완 및 개선



몽골텐트 전도방지 보완

몽골텐트 콘센트 고정요망

전기 콘센트 덮개 설치

분전반 고정 불량

○ 영상회의 : '20.6.30./20.12.22. 17:00~17:30 / 道, 시·군 지역축제 담당자 72명

- (道) 지역축제 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설명, 의견수렴 등
- (시·군) 지역축제 안전관리사례 공유 및 정보 공유, 토론 등

- ▷ `20년도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 설명 * (모든 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권장
- ▷ 가설무대, 소방, 전기, 가스 등 주요 점검사항 전파(축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 가설무대 전도예방, 소화기 배치여부, 전기배선 보호, 가스용기 안전보관 등
- ▷ 기타, 시·군 안전관리사례 공유 및 의견 수렴, 참석자 토론 등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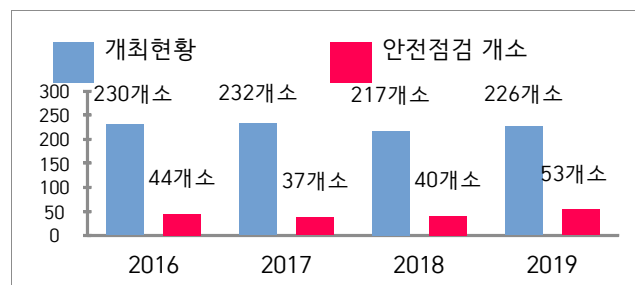
도 안전관리기본계획 설명



도, 시·군 영상회의 및 토론

< 연도별 지역축제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2016년~2019년) *'20년 도 합동안전점검 미 실시 >

구 분	지역축제	점검실적	비고(%)
계	905	174	
2016년	230	44	19
2017년	232	37	16
2018년	217	40	18
2019년	226	53	23



□ 문제점 및 시사점

- 민간관리주체의 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심의는 필수사항이며, 일부 시·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른 의무(1천명이상, 고위험 축제) 대상만 이행하는 등 의무대상 외 축제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가 다소 소홀함
- 또한, 축제 당일 전까지 무대 등 주요시설 미설치하는 경우와 부분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례도 있어 지속적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코로나19로 대부분 취소, 비대면 온라인 개최, 방역지침 하에 일부 오프라인 축제가 잘 준수됨

시사점

- ▷ 지자체 및 민간관리주체에서 대규모의 다양한 콘텐츠를 갖는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어, 개최자와 안전부서 협업을 통해 지역축제 기획단계에서부터 체계적 안전관리 대책마련이 요구됨
- ▷ 『재난안전법』 개정(2020.6.4.시행예정)에 따라 민간관리주체가 개최하는 지역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사항 교육 및 홍보 필요

목표

예방 중심의 방역관리로 국민안심 축제 구현

안전관리계획
수립

- 수립대상 : 모든 지역축제(민간 주최 포함)
- 주요내용
 - 방역조치 방안 및 보건소 협조체계 운영
 - 축제관리자 임무, 관리조직(방역담당관 지정·운영)
비상연락망(방역 부서 포함)
 - 안전 및 방역관리 요원 배치 및 교육 등
 - 화재·테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
 - 안전관리비 1% 이상 책정 권고

안전관리계획
심의

- 계획통보 : 시·군 3주전까지
- 대상 : 관람객 1천명 이상 또는 고위험 축제
- 심의 : 시·군 안전관리위원회
- 방법 : 재난관리부서 사전검토 후 심의
※ 계획 심의 시 방역전문가 자문

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

- 대상 : 안전관리계획 심의대상 축제
- 시기 : 축제개최 1~2일전
- 방법 : 관할 지자체, 건축, 소방, 경찰, 전기,
가스, 방역 등 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
⇒ 지적·개선사항 즉시 지자체 전파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강화

- 축제장 현장합동상황실 설치·운영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준비태세 구축
- 모든 지역축제 보험가입 권고

IV

세부 추진계획

1

안전관리계획 수립

- 대상 : 중앙 및 지자체, 민간 주최 축제(재난안전법 제66조의11)
 - 1천명이상 지역축제(민간 포함)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안전관리계획 수립 : 모든 지역축제

- ▷ 지역축제의 개요 및 부대행사 계획(축제장 질서유지, 교통대책, 가설구조물 설치 운영 등)
- ▷ 축제 장소 및 시설 등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 ▷ 축제장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화재·테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 안전관리 인력의 배치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응급의료인력 배치, 개인별 임무, 비상 상황 대비 대피안내요령 등)
- ▷ 관람객 이동 동선을 고려한 안전에 관한 사항
- ▷ 담당자 비상연락망, 행사장 질서유지 및 교통대책 등

2021년 지역축제 계획(예정) 현황

- ▷ 도내 2021년 축제계획 : 307개소 * 코로나19 관련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월별 현황 】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정미정	해넘이·해맞이
307(개소)	-	-	4	31	49	10	8	12	78	88	6	6	10	5

【 계절별 현황 】

계	봄(3~5월)	여름(6~8월)	가을(9~11월)	일정미정	겨울(12월), 해넘이·해맞이
307(개소)	84	30	172	10	11

* 안전점검(표본) 추진 :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연말연시 축제(행사) 등 20개소 이상

□ 안전관리계획 주요 내용

- 축제 장소 및 시설 등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 감염증 발생 시 감염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 * 행사장 상시 소독, 체온계·손소독제·마스크 등 비치, 대국민 예방 행동수칙 부착 등
- 방역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보건·안전교육에 대한 사항
- 화재·테러 및 인명피해 예방조치에 대한 사항

-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시 선별진료소 신속 이동에 관한 사항
- 관람객 이동 동선 유지, 비상대피 등 안전 조치에 대한 사항
 - * 응급의료인력 배치, 개인별 임무, 비상상황 대비 대피 안내요령 등
- 담당자 비상연락망, 행사장 질서유지 및 교통대책 등
- 지역축제 예산 중 안전관리비 1% 이상* 책정 권고
 - * 안전관리비 집행실적 분석 및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반영비율 적정성 검토

< 안전관리비 사용용도 기준 >

- 안전관리요원의 인건비수당, 축제 안전 설비(안전펜스, 위험표지판, 소화기, 제세동기, 구명정, 구명환, 가스 금속밸브, 가스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전 잠금장치, 등의 설치·유지 및 보수, 보호장비(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절연용 보호구)의 구입, 안전교육훈련, 무대시설의 안전진단과 그 밖의 안전점검, 안전 관련 보험 비용 등

2 안전관리계획 심의

□ 안전관리계획 통보 * 관람객 1천명 이상, 고위험 축제

○ 통보 대상

- 순간 최대 관람인원이 **1천명 이상** 예상되는 축제(민간 주최 포함)
- 장소가 산·수면 또는 불·폭죽·석유류 등을 사용하는 **고위험 축제**

○ 통보 기간

- 축제 개최기관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관할 지역 시·군(재난관리부서)에 축제 개최일 **3주전까지** 통보('20.6.4.시행)

□ 안전관리계획 심의

○ 심의기구 : 道, 시·군 안전관리위원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 2개 이상의 시·군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경우 道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조정

※ 위원회 구성 : 시·군, 경찰서, 해양경찰서, 소방서, 전기, 통신, 가스분야 등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참여로 구성(필요시 道 참여)

○ 심의방법 : 재난관리부서 사전검토 후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개최 10일 전)

※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 사전검토 요청(개최 14일전) 및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 ▷ 지역축제의 개요 및 부대행사 계획의 적정성 검토
- ▷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행 조직 구성·운영
- ▷ 감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대책, 의심환자 발생 시 이송대책
- ▷ 구조·구급 등 행사장 안전관리대책, 행사장 비상대피로 확보, 질서유지 등 교통대책
- ▷ 안전관리 상황 발생 시 조치계획 등

- * 도 표본점검 : 안전관리계획 수정·보완 필요 축제, 산·수면에서 개최되는 축제, 폭발성 물질 사용, 야간 축제 등 고위험 축제, 신규 축제 중 선정
- * 컨설팅·점검방법 : 안전관리계획 검토 의견서 통보,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 제시 등

- 심의결과 통보 축제 5일전까지 축제 개최자 및 관계기관 등 통보
- 심의결과 조치 축제개최자는 축제개최 전 보완조치 완료하고, 보완 결과를 재난관리부서 및 지역축제 담당부서에 통보 후 지역축제 개최

□ 심의 시 고려사항 <감염병 위험단계 지속 시>

- 지자체 주최·주관하는 일회성·이벤트성 축제 연기 또는 취소
- 감염전파 가능성이 큰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
 -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축제, 야외에서 다수가 밀집하여 비말전파(노래, 응원, 구호 등)가 우려되는 축제
- 다수의 취약계층의 참여가 예상되는 축제도 연기 또는 취소
 - 영유아,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당뇨병·심부전·만성 호흡기 질환·만성신부전·암환자 등), 장애인 등

3 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 실시

□ 지자체 민관합동점검 실시 * 행사장 안전점검(민간 포함)실시 및 보완 조치

- 시·군 : 행사장 안전점검(민간 포함) 실시 및 보완 조치
 - 점검내용 : 행사장 내 위험요소 점검(불꽃, 화기 등), 방역 관련 조치 사항, 안전통제선 설치 및 비상 대피로 확보 여부, 구조·구급 장비 등 비치

- 점검반 : 지자체, 전기, 소방, 가스, 방역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반 구성
- 결과조치 : 지적사항 행사 개최 전까지 시정완료 후 행사 진행
- 道: 축제행사(연말연시 등) 포본 점검 실시(연간 20개소 이상)
 - 점검대상 : 안전관리계획 제출·심의 대상 지역축제(민간 포함)
 - 점검내용 : 안전관리계획 이행 실태, 지역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심의 여부, 감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대책, 불꽃놀이, 달집태우기, 수상놀이 등 고위험 축제 예방 대책, 인파 운집 안전관리 중점
- 점검방법: 지자체, 경찰, 소방,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합동

* 道 표본점검 : 1천명 이상 대규모 축제, 산·수면에서 개최되는 축제, 폭발성 물질 사용, 야간 축제 등 고위험 축제, 신규 축제 중 선정

* 점검방법 : 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 참여(안전관리자문단 합동)

- 점검내용: 안전관리계획 보완사항 시설구조물 구조안전성, 전기·가스시설 안전상태, 화재예방, 피난대피, 구조·구급대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 결과조치: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토록 하고 조치결과는 지역축제 주관단체(주관부서)에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
- ※ 동일 사례로 반복 지적 없도록 조치·개선사항 기록관리 및 전파

□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 축제 특성에 맞는 안전기준(매뉴얼)을 적용하여 설치 및 점검 등 추진하고, 가시설물 등 각종 시설물 안전기준 부합 여부 확인을 위해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관리 추진

□ 행안부 주관 합동안전점검

- 시기 : 정월대보름(2월), 봄철(3~5월), 가을철(9~11월), 연말연시(12~1월)
- 중점대상 : 민간 주최 고위험 축제(불꽃, 수상) 등(21년 18건)
- 점검반 구성 : 행안부, 지자체(시·도, 시·군·구), 소방, 경찰, 시설, 전기, 가스, 방역 등 유관기관 합동 점검 실시
- 점검방법 : 안전점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시점검 방식

* 1주일 전에 점검계획을 시·도로 통보하고, 해당 시·군·구는 불시에 현장점검 실시

4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강화

□ 축제기간 중 현장합동상황실 설치운영

- 구성 : 안전관리자, 안전요원, 방역담당관, 방역 관리요원, 구조·구급요원 등
- 주요활동
 - 감염병 방역조치 마련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최기관, 지자체 (방역부서 포함) 등 관계 기관과 협조체계 구축·운영
 - 종료 시까지 시설·전기·가스·소방·교통·방역 등 안전 관리, 질서 유지
 - 행사진행요원, 관계자 대상 교육 및 감염 예방주의 홍보
 - 의심환자 발생 시 대기를 위한 환자격리 공간 마련
 - 의심환자 발생시 선별진료소로 신속 이송 지원
 -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사전 통제, 출입자 명부 관리
 - 사고·테러 발생 시 동요방지, 피난유도, 현장사고 수습 등 초동대처
 -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 및 소방관서에 즉시 협조요청 등
 - 사고발생 시를 대비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팀과 연계체계 유지

□ 지역축제 보험가입 권고

- 보상대상 : 참가자, 관람객, 진행자 등 지역축제 관계자
- 가입금액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금액* 이상
 - * (사망) 1억5천만원, (부상) 최대 5천만원, (후유장애) 장애급별 최대 1억5천만원
- 지역축제 개최 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 지역축제 사고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태세 구축

- 도지사, 시장·군수가 현장 사고실태 파악·수습 주도

※ 지역축제 중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신속히 시·군 및 광역자치단체(道)에서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여 효율적인 재난 복구·수습 등 관리

V**행정사항**

- 지자체별 「'21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 축제 주관단체·부서에 전파, 안전관리계획 사전심의 실효성 확보
- 道: 대규모, 고위험 지역축제 안전관리실태 점검(표본) 및 컨설팅 지원
 - 봄철, 가을철, 겨울철, 연말연시 안전관리실태 등
- 시·군: 지역축제 안전관리 철저 ※ 안전관리 세부계획 수립·시행

- ▷ 안전관리계획(소방서 재난대처계획) 수립, 심의, 합동점검, 보험가입 철저
- ▷ 시·군별 「2021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 주관단체·부서 사전 통보 및 제출 일정을 준수하여 안전관리 실효성 확보

안전관리계획 제출
(축제개최 21일전)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축제 10일전)



합동 지도·점검
(축제 1~2일전)



현장상황실 운영
(축제기간 중)

- 추진실적 보고: 분기말 익월 5일까지 서식에 맞추어 작성(시·군) 및 제출
 - 1~3월(1/4분기), 4~6월(2/4분기), 7~9월(3/4분기), 10~12월(4/4분기)
 - ※ 지역축제 안전관리 추진 실적(보고 서식 붙임 3)
- 지역축제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상황 보고(道, 시·군)
 - ※ 인명피해는 사망자 및 부상자로 구분(보고 서식 붙임4)

VI**향후계획**

- `21년 경기도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21. 3. 각시군)
- 봄·여름·가을철 지역축제 안전관리 실태점검 실시(`21. 3.~11.)
 -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추이 등을 감안하여 점검일정은 변경·조정 될 수 있음
- 분기별 시·군 지역축제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道 → 행정안전부)
- 겨울철, 연말연시행사 안전관리대책 실태점검 실시(`21. 12.)

- ≤ 붙임 ≥
1. '21년 월별 지역축제 계획(예정)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축제) 1부.
 3. 지역축제 안전관리 분기별 추진실적(서식) 1부.
 4. 지역축제 안전사고 발생보고(서식) 1부.
 5.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6. 분야별 안전점검 세부 체크리스트 1부. 끝.

붙임 1

'21년 월별 지역축제 계획[예정]

□ 31개 시·군 : 307개소

시·군	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미정	'22.1월
계	307	4	31	49	10	8	12	78	88	6	6	10	5
수원시	21	-	1	2	3	1	1	3	10	-	-	-	-
고양시	13	-	1	1	-	-	-	3	2	-	-	5	1
용인시	18	-	1	4	-	-	2	4	6	-	1	-	-
성남시	4	-	1	-	-	-	-	1	1	-	1	-	-
부천시	47	-	8	7	1	2	2	15	11	-	-	1	-
안산시	14	-	2	3	-	-	-	4	4	-	1	-	-
화성시	13	-	3	2	1	-	-	2	5	-	-	-	-
남양주시	3	-	-	-	-	1	-	1	1	-	-	-	-
안양시	9	-	1	2	-	-	1	4	1	-	-	-	-
평택시	8	-	-	-	1	-	2	-	5	-	-	-	-
의정부시	7	-	-	3	-	-	-	-	3	1	-	-	-
파주시	12	-	1	2	-	-	-	3	6	-	-	-	-
시흥시	2	-	-	-	-	-	-	1	1	-	-	-	-
김포시	20	1	4	5	-	1	-	7	1	-	-	1	-
광명시	15	-	-	2	-	-	1	1	9	-	-	2	-
광주시	4	-	1	-	1	-	-	1	-	-	-	-	1
군포시	7	1	-	1	-	1	-	3	1	-	-	-	-
이천시	5	-	1	-	-	1	-	1	1	1	-	-	-
오산시	1	-	-	-	-	-	-	-	-	-	-	-	1
하남시	3	-	-	1	-	-	-	2	-	-	-	-	-
양주시	9	-	1	3	-	-	-	3	1	1	-	-	-
구리시	3	-	-	-	-	-	-	1	1	-	-	-	1
안성시	8	-	-	-	1	-	1	6	-	-	-	-	-
포천시	14	-	1	2	-	-	-	1	6	2	2	-	-
의왕시	5	-	1	2	-	-	-	2	-	-	-	-	-
여주시	7	-	1	2	-	-	-	-	3	-	-	-	1
양평군	7	2	2	1	-	1	-	1	-	-	-	-	-
동두천시	7	-	-	1	-	-	-	2	4	-	-	-	-
과천시	18	-	-	3	2	-	1	6	4	1	1	-	-
가평군	0	-	-	-	-	-	-	-	-	-	-	-	-
연천군	3	-	-	-	-	-	1	-	1	-	-	1	-

* '20~'21년 해넘이·해맞이 2개소 실시예정(남양주 1, 안성 1)/'21년 2월 축제 7개소 실시예정(수원 2, 용인 1, 오산1, 안양 1, 평택 1, 동두천 1)

□ 최근 3년간 지역축제 안전점검 현황 (2020년 코로나19로 道 합동안전점검 미 실시)

구분	지역축제 수	점검대상(건수)	조치내용(건수)		비고
			지적사항	조치 완료	
계	675	130	806	806	
2019년도	226	53	410	410	
2018년도	217	40	365	365	
2017년도	232	37	31	31	

【단계별 조치사항】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공통사항】

<참여자·이용자>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출근을 자제하기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 실내흡연실 이용 자제하고 가급적 실외 흡연실 이용하기
 - 흡연실을 이용하는 경우 거리 유지, 대화 자제, 이용 후 손 소독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기

<책임자·종사자>

- 방역을 관리하는 담당부서(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유증상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2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기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 실내흡연실은 이용하지 않도록 닫아두고 실외 흡연실 이용 권고하기
 - 흡연실 내에서는 사람 간 거리 유지, 대화 자제하도록 안내하기
- ※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하여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부과) 시설·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지역축제】

- ※ 지역축제는 비대면 방식으로 우선 개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추진하는 경우 아래의 방역 수칙 준수, 또한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이용자>

- 가급적 비대면 또는 영상으로 참여하기
- 불가피하게 현장 참여를 하는 경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손 위생(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 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하기
- 축제 입장권 구매 시 현장 구매보다 사전 온라인 예매하기
- 고위험군(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은 가급적 현장 참여 자제하기
- 행사장 출입 시 손 위생,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 행사장 객석, 휴게 시설, 식당 이용 시 2m(최소 1m) 거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그재그로 한 칸 띄어 앉고 대화는 자제하기
- 휴게 시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이 밀집되지 않도록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 행사장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 자제하기
- 줄서기 등 대기할 때에는 사람 간 2m(최소 1m) 간격 두기
- 행사장 내 셔틀버스 이용 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가 유지되도록 한 칸씩 띄어 앉고 대화 자제하기
- 행사 참여 중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역축제 관계자에게 알리기

※ 축제 행사장 내 전시행사, 기념식, 음식점, 카페, 공연장, 유원시설, 공중회장실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책임자·종사자>

- 불가피하게 대면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사전 예약제, 시간제 운영, 차량 이동형 축제장 관람 등의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관람객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 유도하기
- 행사장이 밀집되지 않고 2m(최소 1m) 거리 두기가 유지되도록 입장 정원을 제한하기
 - * 예) 기념식인 경우 기념식장의 바닥면적 4m² 당 입장객 1명으로 제한, 행사장 수용 인원의 50%로 입장 정원 제한 등 거리 두기가 가능한 방안 마련
 -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2m(최소 1m) 간격을 두고 대기 하도록 안내하기
- 입장권은 현장 판매보다 사전예매 안내하기
- 축제 관람객, 참가자, 관계자 등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를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하기
- 입구와 출구를 달리하여 이용자들이 한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동선을 마련하기
- 공연, 체험행사 등은 실외 중심으로 운영하며 2m(최소 1m)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탁상과 의자를 지그재그 등으로 배치하기
- 실내에서 공연, 체험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며 충분히 환기하기
 - 에어컨을 사용하는 경우 바람의 방향이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하고, 최소 2시간 마다 1회 이상 환기
 - 무대와 객석 간 사이에는 최대한 거리(최소 2m)를 유지하며, 공연 전·후로 객석과 무대 등 공연시설을 소독하기
- 많은 사람이 일시에 한 장소에 집중될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선착순, 악수·사인회 등)는 자제하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와 프로그램은 최소화하기
-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 마이크는 커버를 씌우고, 개인마다 마이크 덮개를 새것으로 교체하기
- 시식 및 홍보 부스(코너)는 운영을 중단하거나 최소화하되,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부스 간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참석자들이 한꺼번에 모이지 않도록 참석자 간 2m(최소 1m) 유지 안내하기
 -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하기
 - 시식, 시음, 홍보 코너에서 발생하는 이쑤시개, 컵, 휴지 등 침이 묻을 수 있는 쓰레기는 타인의 손이 닿지 않도록 별도로 깨끗이 버릴 수 있게 조치하기
 - 음식물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섭취하기
- 판매원과 이용객 사이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투명 가림막 등을 설치하기

- 가능한 포장 판매 활성화 및 대규모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유도하기
- 현장 결제 시 전자 결제방식(모바일 페이, QR코드, NFC카드, 신용카드 등)을 활용하도록 하기
- 식당, 휴게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도록 자리를 배치하고,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분산 이용 안내하기
- 생활 속 거리 두기(현수막, 문자 전광판, 안내방송 등) 및 개인 위생수칙 홍보·안내하기
- 출입구 및 행사장 내 여러 곳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 단체식사 제공은 자제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 도시락 형태로 제공하기
- 해외 거주하는 인사들의 행사 초대는 자제하기
- 매표원, 출입 관리요원 등은 수시로 손 소독제 사용하기
- 진행요원 등의 식사 시간은 시차를 두고 운영하여 관계자 간 밀집을 최소화하기
(예: A조/18:30~19:30, B조/19:30~20:30)
- 축제 진행요원 등에게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참여자에게 기본수칙(마스크 착용, 거리 유지 등) 준수 안내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 행사장 셔틀버스 운영 시, 마스크 착용 및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가 유지되도록 한 칸씩 띄어 앉고 대화 자제 안내하기
- ※ 축제 행사장 내 음식점, 카페, 공연장, 유원시설,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붙임 3

지역축제 안전관리 분기별 추진실적[서식]

[분기별(총4회) 실적 익월(4,7,10,12월) 5일 이내 보고]

1. 총 평 (육하원칙에 의해 서술개조식으로 작성)

○

2. 추진실적

○ 총괄

(단위 : 건)

지역축제 개최건수	총 관람객수 (천명)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심의*			합동점검 실시*			보험가입	
		수립	미수립	심의 대상	심의	미심 의	점검 대상	실시	미실 시	가입	미가입

* 안전관리 심의 대상 및 합동점검 대상 : 관람객 1천명이상, 고위험 축제

※ 세부내역 : 별첨(엑셀서식 참고)

○ 시·도 주관 시·군·구 대상 지역축제 표본점검 현황

시군구	축제명	축제기간	점검일자	점검결과(건)			
				총계	시정요구	현지시정	권고

3. 합동현장점검 주요지적 사항

- (공통)
- (시설)
- (소방)
- (가스)
- (전기)

4. 문제점 및 건의사항

○

○

5. 수범사례(자체 특수 시책 등)

(육하원칙, 사진첨부, 별지작성 가능)

○ (00시·군)

[안전사고 발생 시에만 보고]

 사고개요

- 일 시 : 2021. 00. 00(○요일) 00:00
- 장 소 : * 주소와 무대위, 관람석 등 세부장소 표기
- 원인(경위) : *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작성
- 피해상황
 - 인명피해 : (사망) 명, (부상) 명
 - 재산피해 :

 사고내용(경위)

- -

 조치사항(환자, 현장)

- 환자 조치사항
 - (환자상태 포함)
- 현장 조치사항

 보험가입 여부 및 배상계획

- -

 향후 조치계획

- -

※ 별첨 : 축제 개요 및 현장 사진

붙임 5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적의 활용

점검일시	2021. . .	점검구분	
점검장소			
점검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점검자 의견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 일반 분야(방역 부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운영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계획 심의 여부 - 지역안전관리협의체(분야별 전문가) 현장 합동점검 추진사항 등 ○ 안전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사고 대비 유형별 대처요령 수립 - 안전관리요원 사전 안전교육 -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합동상황실 운영 - 안전관리책임자 실명 공개, 보험가입 등 ○ 사고 예방 대책 마련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시작·종료 시 일시집중 인원 분산 대책 - 탑승기구 정원 점검 등 안전관리 요원 배치 - 관람객 대상 비상구·대피로 사전 홍보 방안 - 환풍구·가설 구조물 등 추락·전도 위험시설 통제 ○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마련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시 관람객 대피 및 분산 대책 - 사고 발생 대비 복구 장비·자재 확보 방안 - 대규모 피해 대비 지대본 가동 준비 현황 - 발생 사고 관련 언론 대응 대책 등 		
■ 방역관리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 두기 방역지침 준수(책임자·종사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 관리부서(관리자) 지정 및 보건소 담당자 연락망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증상자 코로나19 검사 안내 및 보건소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 - 출입구 및 시설 각처에 방역물품 비치(손소독제, 비접촉식 체온계, 열화상 카메라 등) 		

- 주기적으로 소독 및 실내 환기(매일 2회 이상)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입장 정원 제한 및 물리지 않도록 분산유도 *1단계 500인 이상 지자체 신고(방역수칙 의무화), 1.5~2단계 100인 미만, 2.5단계 50인 미만, 3단계 10인 미만)		
- 시설 내·외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줄서기 등)		
- 전자출입 또는 수기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입구와 출구를 달리하여 이용자들이 한방향으로 이동 동선 마련		
- 실내 공연, 체험 등 행사 시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자제, 충분한 환기 * 최소 2시간 마다 1회 이상, 무대와 객석 간 최소 2m 이상 유지, 공연 전후 시설 소독		
- 이벤트성 행사(선착순, 악수, 사인회 등) 자제 및 침방울 튀는 행위 최소화(노래, 구호 등)		
- 시식 및 홍보 부스 최소화, 부스간 2m 이상 간격 유지, 참석자 간 2m(최소 1m) 유지 * 개인접시 덜어먹기, 침이 묻을 수 있는 쓰레기 조치, 지정 장소에서만 음식물 섭취		
- 판매원과 이용객 사이 2m(최소 1m) 이상 유지, 투명 가림막 등 설치, 현장 전자결제 활용		
- 식당, 휴게실 등 이용 시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자리 배치, 2m(최소 1m) 유지		
- 거리두기 및 위생수칙 홍보(현수막, 전광판, 방송, 안내문 게시 등)		
- 출입구 및 각처에 휴지 및 뚜껑있는 쓰레기통 비치		
- 단체식사 제공 자제, 불가피 시 개인 도시락 제공		
- 축제 진행요원 방역수칙 교육 및 참여자 기본수칙 준수 안내 업무 수행		
- 셔틀버스 운영 시 마스크 착용,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한칸씩 띄어 앉고 대화자제 * 운행 전후 수시 소독		
○ 거리 두기 방역지침 준수(이용자 수칙)		
- 전자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 협조(이름, 전화번호, 신분증 제시 등)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발열, 호흡기 증상 시 축제 관계자에게 알리기		
- 행사장 내 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섭취 자제		
- 줄서기, 행사장 시설 이용시 2m(최소1m) 이상 거리 유지·분산이용 및 한칸띄어 앉고 대화자제		
■ 시설물 분야		
○ 야외 임시 공연장 안전관리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골구조물의 구조내력 저하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상, 균열, 누수여부 ,도장재료 마감 및 부식상태, 형강 등 관련 부재 변위·변형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부 마감재(타일·석재 등) 박리·박락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단 눈슬립 부착 및 파손상태 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구급요원 및 장비의 현지지원에 따른 위치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와 위험물질 및 화기관리 적정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구 유도등(시인성, 방해요소, 작동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프링클러, 방화셔터, 제연경계벽(설치여부, 작동방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물건 적재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구, 계단 등 비상통로 내 무분별 판매행위 및 물건 적치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보설비 임의차단 등 관리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실, EPS실 분전반 앞 등 물건 적재 및 잠금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전차단기 사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판기 등 편의시설 전기기계기구 외함 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단기와 전기배선의 상호용량에 맞게 설치·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전반, 전압계, 전력계의 동작 상태와 과부하·과전압 등 지시계기 정상작동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발전기 등 예비전원 확보 및 정상작동을 위한 주기적 무부하 시험운전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내 전선노출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용기 보관실 내 가연성 물질 적재 등 관리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kg이상 용기 전도방지 및 차양시설 - 250kg(체적거래시는 500kg) 이상 방호벽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차단기, 경보기 등 임의차단 및 정상작동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무호스에서 분기 등 가스기기 이용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배관의 매설 및 고정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보일러의 흡·배기구시설 관리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일러 배기통 폐가스 누설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와 위험물질 및 화기관리 적정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식 부탄가스 사용 및 관리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 내 애드벌룬 설치 시 주입가스(헬륨가스) 확인 등 		

붙임 6

분야별 안전점검 세부 체크리스트

1. 가설구조물 분야

※ 해당 축제·행사별 필요사항만 발체하여 사용

공통사항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양 호	불 량	해 당 없 음
서류	구조계산서	- 사용자재 및 사용용도에 적정하게 작성하였는가?			
	시공상 세도 (조립도)	- 시공상 세도는 구조계산 결과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하였는가?			
	안전관리 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는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가?			
작업자	유자격자	- 비계를 설치하는 작업자는 자격요건을 갖춘자가 투입되는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안전교육	- 비계 설치 작업 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자재 검수	반입자재 품질관리	- 반입된 자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 확인의 신고)에 따른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이 반입되었는가?			
		- 반입된 자재별 시험성적서는 제출하였는가? ※ 막지 등의 방염성능검사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 반입된 자재에 대해서 자재검수는 실시하였는가?			
작업 환경	출입통제	- 작업장 내 출입통제 조치는 실시하였는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기상상태	- 풍속(10m/s 이상), 강우량(1mm/h 이상) 및 강설량(1cm/h 이상)을 확인하였는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			

※ 지역축제장에 사용되는 가설기자재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은 아니며 안전관리를 위한 참고 자료임

□ 무대단상

구 분		점검내용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설치 중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 작업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는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 고소작업자는 안전대 걸이를 걸고 작업을 실시하는가? ※ 고소작업 :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작업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 안전대 걸이를 걸 수 없을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생명줄)를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하는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설치 상태	- 시공상 세도와 일치되게 설치되고 있는가? [별지 참조]			
	지반 상태	- 지반상태는 견고한가?			
	반침철물	- 지반침하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인 깔목 또는 깔판을 설치하였는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및 제70조			
		- 반침철물과 지반사이는 밀착되게 설치되었는가?			
		- 조절형 반침철물 전체길이의 1/3 이상이 지지대에 삽입되어 설치되었는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수직 및 수평	- 비계구조물은 수직 및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가?			
	흔들림	- 비계구조물은 흔들림 방지 조치를 실시하였는가?			
	체결부	- 비계구조물 각 부재의 연결부위는 견고하게 체결되었는가?			
	바닥재	- 바닥재와 바닥재간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 바닥재는 이탈방지 조치를 실시하였는가?			
		- 미끄러짐 방지 조치는 실시하였는가?			
안전난간	-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 조치를 실시하였는가?				
설치종료 및 유지관리	비계 구조물	- 바닥재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는?			
		-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는?			
		-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는?			
		- 손잡이의 탈락 여부는?			
		- 비계구조물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는?			
해체	해체계획	- 해체 시 전도방지 조치를 실시하였는가?			
		- 해체는 설치의 역순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별지] 무대단상 설치상태 체크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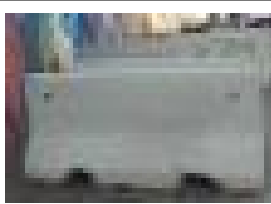
(a) 바닥재 + 시스템 비계		□ 표준대상 재료 조건 (단위: mm) - 크기 : 900(A)×1,800(B)×1,500(C) - 사용재료 <table border="1" data-bbox="702 414 1412 526"> <tr> <td></td> <td>바닥재</td> <td>가로</td> <td>세로</td> <td>두께</td> <td>설치간격</td> </tr> <tr> <td></td> <td>합 판</td> <td>900</td> <td>1,800</td> <td>15</td> <td>-</td> </tr> <tr> <td></td> <td>장선목</td> <td>40</td> <td>85</td> <td>-</td> <td>300</td> </tr> </table>		바닥재	가로	세로	두께	설치간격		합 판	900	1,800	15	-		장선목	40	85	-	300																						
	바닥재	가로	세로	두께	설치간격																																					
	합 판	900	1,800	15	-																																					
	장선목	40	85	-	300																																					
(b) 바닥재 + 강관틀 비계		<table border="1" data-bbox="702 548 1412 840"> <tr> <td></td> <td>하부 지지대</td> <td>부 재</td> <td>강종</td> <td>외경×두께</td> <td>길이</td> </tr> <tr> <td rowspan="3">(a)</td> <td rowspan="3">시스템 비계</td> <td>수직재</td> <td>STK500</td> <td>48.6×2.3</td> <td>1,500</td> </tr> <tr> <td>수평재</td> <td>STK400</td> <td>42.7×2.2</td> <td>900, 1800</td> </tr> <tr> <td>받침철물</td> <td>STK500</td> <td>34.0×4.0</td> <td>600</td> </tr> <tr> <td rowspan="3">(b)</td> <td rowspan="3">강관틀 비계</td> <td>수직재</td> <td>STK500</td> <td>42.4×2.2</td> <td>-</td> </tr> <tr> <td>보강재</td> <td>STK400</td> <td>26.9×1.7</td> <td>-</td> </tr> <tr> <td>횡가재</td> <td>STK500</td> <td>42.7×2.2</td> <td>-</td> </tr> <tr> <td></td> <td></td> <td>교차가새</td> <td>STK400</td> <td>21.4×1.7</td> <td>-</td> </tr> </table>		하부 지지대	부 재	강종	외경×두께	길이	(a)	시스템 비계	수직재	STK500	48.6×2.3	1,500	수평재	STK400	42.7×2.2	900, 1800	받침철물	STK500	34.0×4.0	600	(b)	강관틀 비계	수직재	STK500	42.4×2.2	-	보강재	STK400	26.9×1.7	-	횡가재	STK500	42.7×2.2	-			교차가새	STK400	21.4×1.7	-
	하부 지지대	부 재	강종	외경×두께	길이																																					
(a)	시스템 비계	수직재	STK500	48.6×2.3	1,500																																					
		수평재	STK400	42.7×2.2	900, 1800																																					
		받침철물	STK500	34.0×4.0	600																																					
(b)	강관틀 비계	수직재	STK500	42.4×2.2	-																																					
		보강재	STK400	26.9×1.7	-																																					
		횡가재	STK500	42.7×2.2	-																																					
		교차가새	STK400	21.4×1.7	-																																					
항목	확인사항	체크 일치 불일치																																								
1. 크기	- 900(A)×1,800(B)×1,500(C)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지반	- 지반침하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 : 깔목/깔판 두께 45mm 이상 설치 - 조절형 받침철물의 지지대 삽입길이 : 전체길이×1/3 이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지지대 조립부	- 지지대 조립 형태 <table border="1" data-bbox="295 1198 1204 1523"> <tr> <td>지지대</td> <td>항목</td> <td colspan="2">내 용</td> </tr> <tr> <td rowspan="2">시스템 비계</td> <td rowspan="2">수평재 접합부 형태</td> <td></td> <td></td> </tr> <tr> <td><디스크형></td> <td><포켓형></td> </tr> <tr> <td>강관틀 비계</td> <td>교차가새 조립형태</td> <td colspan="2"></td> </tr> <tr> <td></td> <td></td> <td colspan="2">※ 안전핀 체결 확인</td> </tr> </table>	지지대	항목	내 용		시스템 비계	수평재 접합부 형태			<디스크형>	<포켓형>	강관틀 비계	교차가새 조립형태					※ 안전핀 체결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지대	항목	내 용																																								
시스템 비계	수평재 접합부 형태																																									
		<디스크형>	<포켓형>																																							
강관틀 비계	교차가새 조립형태																																									
		※ 안전핀 체결 확인																																								
4. 바닥재 조립부	- 바닥재와 지지대의 조립 형태(커넥터) <table data-bbox="422 1590 1077 1792"> <tr> <td></td> <td></td> </tr> <tr> <td><시스템 비계 커넥터></td> <td><강관틀 비계 커넥터></td> </tr> </table>			<시스템 비계 커넥터>	<강관틀 비계 커넥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시스템 비계 커넥터>	<강관틀 비계 커넥터>																																									
5. 하중	- 무대단상 하중제한 <table border="1" data-bbox="295 1859 646 2027"> <tr> <td>무대단상</td> <td>최대허용활하중 [kN/m²(kg/m²)]</td> </tr> <tr> <td>바닥재</td> <td>3.0kN/m²(300kg/m²)</td> </tr> <tr> <td>시스템 비계 강관틀 비계</td> <td>5.0kN/m²(500kg/m²)</td> </tr> </table> · 바닥재의 면적당 하중 : 300kg/m ² · 바닥재 1개당 면적 : 1.8 × 0.9 = 1.62m ² · 바닥재 1개당 안전하중 : 300kg/m ² ×1.62m ² = 486kg ∴ 성인 1인의 몸무게를 80kg로 가정할 경우 486/80=6.1명 이므로 바닥재 1개에는 성인 6명 이내로 제한.	무대단상	최대허용활하중 [kN/m ² (kg/m ²)]	바닥재	3.0kN/m ² (300kg/m ²)	시스템 비계 강관틀 비계	5.0kN/m ² (500kg/m ²)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무대단상	최대허용활하중 [kN/m ² (kg/m ²)]																																									
바닥재	3.0kN/m ² (300kg/m ²)																																									
시스템 비계 강관틀 비계	5.0kN/m ² (500kg/m ²)																																									

※ 위 내용과 상이한 구조인 경우 별도의 구조검토를 통해 구조 안전성 확인 후 사용가능함

□ 트러스 구조물

구 분		점검내용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설치 중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 작업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는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 고소작업자는 안전대 걸이를 걸고 작업을 실시하는가? ※ 고소작업 :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작업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 안전대 걸이를 걸 수 없을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생명줄)를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하는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중량물 취급	- 자재 및 장비 인양은 적정하게 실시하는가?			
		- 슬링벨트, 사쿨 및 달기체인 상태는 양호한가?			
	장비 고정	- 장비(음향, 조명, 스크린 등)의 고정은 적정한가?			
	설치 상태	- 시공상 세도와 일치되게 설치되고 있는가? [별지 참조]			
	지반 상태	- 지반상태는 견고한가?			
	받침철물	- 지반침하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인 깔목 또는 깔판을 설치하였는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및 제70조			
		- 받침철물과 지반사이는 밀착되게 설치되었는가?			
	수직 및 수평	- 트러스 구조물은 수직 및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가?			
	흔들림	- 트러스 구조물은 흔들림 방지 조치를 실시하였는가?			
	체결부	- 트러스 구조물 각 부재의 연결부위는 견고하게 체결되었는가?			
	전도방지	- 트러스 구조물의 전도방지 조치는 적정한가?			
		- 와이어로프의 설치각도(60° 이내)는 적정한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			
- 지지물(말뚝, 쉐들리지)의 매립깊이 또는 중량은 적정한가?					
모터작동	- 모터의 정격하중은 적정한가?				
	- 체인의 상태는 양호한가?				
설치종료 및 유지관리	트러스 구조물	- 트러스 구조물은 수직 및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가?			
		- 트러스 구조물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는?			
		- 트러스 구조물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는?			
		- 와이어로프는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 장비(음향, 조명, 카메라 등)의 체결상태는 양호한가?			
해체	해체계획	- 해체 시 전도방지 조치를 실시하였는가?			
		- 해체는 설치의 역순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별지] 트러스 설치상태 체크리스트

		<input type="checkbox"/> 표준대상 재료 조건 (단위: mm) - 사용재료																			
		종 류	부 재	강 종	외경×두께	크기 (a×b)	보 트러스	수직재	6061-T6	50.0×5.0	760×520	수평재	50.0×5.0	경사재	35.0×3.0	기둥 트러스	수직재	50.0×3.0	400×400	수평재	50.0×3.0
종 류	부 재	강 종	외경×두께	크기 (a×b)																	
보 트러스	수직재	6061-T6	50.0×5.0	760×520																	
	수평재		50.0×5.0																		
	경사재		35.0×3.0																		
기둥 트러스	수직재		50.0×3.0	400×400																	
	수평재		50.0×3.0																		
	경사재		25.0×3.0																		
case 1	12,000×6,000×10,000																				
case 2	15,000×6,000×10,000																				
case 3	18,000×9,000×10,000																				
case 4	21,000×9,000×10,000																				
case 5	24,000×9,000×10,000																				
항목	확인사항			체크																	
				일치	불일치																
1. 크기	<input type="checkbox"/> case 1	12,000×6,000×1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case 2	15,000×6,000×10,000																			
	<input type="checkbox"/> case 3	18,000×9,000×10,000																			
	<input type="checkbox"/> case 4	21,000×9,000×10,000																			
	<input type="checkbox"/> case 5	24,000×9,000×10,000																			
2. 지반	- 지반침하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 : 깔목/깔판 두께 45mm 이상 설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전도 방지	- 전도방지조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아웃트리거>	 <와이어로프+웨이트>	 <와이어로프+앵커>																		
	※ 각각의 기둥 트러스에 4개 방향으로 아웃트리거 설치(대각 방향) ※ 장소여건에 따라 모든 기둥 트러스에 아웃트리거 설치가 어려운 경우 '와이어로프+웨이트/앵커'로 보완 가능																				
	- 와이어로프의 설치각도(60°이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하중	- 트러스 하중제한 및 지지판 크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크기(m)	음향장비 최대허용활하중 kN(ton)	조명장비 최대허용활하중 kN/m(kg/m)			지지판 크기 (mm)															
	12×6×10	15.0(1.5)	2.0(200)			700×700															
	15×6×10		2.0(200)																		
	18×9×10		1.5(150)																		
	21×9×10		0.8(80)			800×800															
21×9×10	0.6(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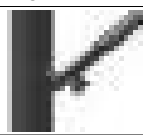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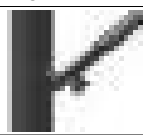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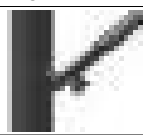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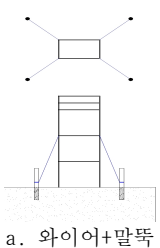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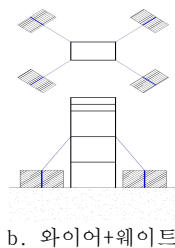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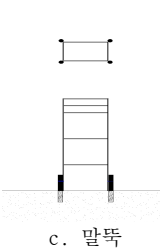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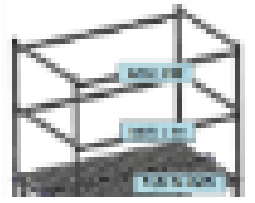
※ 위 내용과 상이한 구조인 경우 별도의 구조검토를 통해 구조 안전성 확인 후 사용가능함

□ 타워시설(음향, 조명, 카메라)

구 분		점검내용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설치 중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 작업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는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 고소작업자는 안전대 걸이를 걸고 작업을 실시하는가? ※ 고소작업 :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작업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 안전대 걸이를 걸 수 없을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생명줄)를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하는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중량물 취급	- 자재 및 장비 인양은 적정하게 실시하는가?			
	장비 고정	- 장비(음향, 조명, 카메라 등)의 고정은 적정한가?			
	설치 상태	- 시공상 세도와 일치되게 설치되고 있는가?[별지 참조]			
	지반 상태	- 지반 상태는 견고한가?			
	반침철물	- 지반침하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인 깔목 또는 깔판을 설치하였는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및 제70조			
		- 반침철물과 지반사이는 밀착되게 설치되었는가?			
	수직 및 수평	- 타워시설은 수직 및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가?			
	흔들림	- 타워시설은 흔들림 방지 조치를 실시하였는가?			
	체결부	- 타워시설 각 부재의 연결부위는 견고하게 체결되었는가?			
	작업발판	- 작업발판은 이탈방지 조치를 실시하였는가?			
	안전난간	-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 조치를 실시하였는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전도방지	- 설치 시 전도방지 조치를 하였는가?			
- 와이어로프의 설치각도(60° 이내)는 적정한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					
- 지지물(말뚝, 쉐들리지)의 매립깊이 또는 중량은 적정한가?					
설치종료 및 유지관리	타워시설	-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는?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 종료 후 전도방지 조치를 하였는가?			
		-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는?			
		-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는?			
		- 손잡이의 탈락 여부는?			
		- 타워시설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는?			
		-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는?			
해체	해체계획	- 해체 시 전도방지 조치를 실시하였는가?			
		- 해체는 설치의 역순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별지] 타워시설 설치상태 체크리스트

구분	부재	강종	외경×두께	길이	
				수직재	수평재
강관틀 비계	수직재	STK500	42.4×2.2	-	-
	보강재	STK400	26.9×1.7	-	-
	횡가재	STK500	42.7×2.2	-	-
시스템 비계	교차가새	STK400	21.4×1.7	-	-
	수직재	STK500	48.6×2.3	1800	-
	수평재	STK400	42.7×2.2	1800	-
	가새재	STK400	42.4×2.2	-	-
이동식 비계	받침철물	STK500	34.0×4.0	600	-
	기둥재	STK400	42.4×2.1	-	-
	횡가재	STK400	42.4×2.1	-	-
	보강재	STK400	26.9×1.7	-	-
	교차가새	STK400	21.4×1.7	-	-

항목	확인사항	체크																		
		일치	불일치																	
1. 크기	<input type="checkbox"/> case 1-강관틀 비계 1,219×1,800×5,100 <input type="checkbox"/> case 2-시스템 비계 1,800×1,800×5,400 <input type="checkbox"/> case 3-이동식 비계 1,219×1,800×5,1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지반	- 지반침하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 : 깔목/깔판 두께 45mm 이상 설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조립 형태	- 조립 형태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류</th> <th>항목</th> <th colspan="2">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시스템 비계</td> <td rowspan="2">수평재 접합부 형태</td> <td></td> <td></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디스크형> <포켓형> </td> </tr> <tr> <td>강관틀 /이동식 비계</td> <td>교차가새 조립형태</td> <td colspan="2"></td> </tr> </tbody> </table> ※ 안전핀 체결 확인	종류	항목	내용		시스템 비계	수평재 접합부 형태			<디스크형> <포켓형>		강관틀 /이동식 비계	교차가새 조립형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종류	항목	내용																		
시스템 비계	수평재 접합부 형태																			
		<디스크형> <포켓형>																		
강관틀 /이동식 비계	교차가새 조립형태																			
4. 전도 방지	- 와이어로프의 설치각도(60° 이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전도방지 방법  a. 와이어+말뚝  b. 와이어+웨이트  c. 말뚝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하중	- 타워시설 하중제한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카메라 최대허용하중</th> <th colspan="2">조명 최대허용하중</th> </tr> <tr> <th>작업대하단</th> <th>난간1·2단</th> </tr> </thead> <tbody> <tr> <td>case 1 강관틀 비계</td> <td>4.5kN/m² (450kg/m²)</td> <td>3.5kN/m (350kg/m)</td> <td>0.6kN/m (60kg/m)</td> </tr> <tr> <td>case 2 시스템 비계</td> <td>5.0kN/m² (500kg/m²)</td> <td>3.0kN/m (300kg/m)</td> <td rowspan="2">0.55kN/m (55kg/m)</td> </tr> <tr> <td>case 3 이동식 비계</td> <td>5.5kN/m² (550kg/m²)</td> <td>2.5kN/m (250kg/m)</td> </tr> </tbody> </table>	구분	카메라 최대허용하중	조명 최대허용하중		작업대하단	난간1·2단	case 1 강관틀 비계	4.5kN/m ² (450kg/m ²)	3.5kN/m (350kg/m)	0.6kN/m (60kg/m)	case 2 시스템 비계	5.0kN/m ² (500kg/m ²)	3.0kN/m (300kg/m)	0.55kN/m (55kg/m)	case 3 이동식 비계	5.5kN/m ² (550kg/m ²)	2.5kN/m (250kg/m)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구분			카메라 최대허용하중	조명 최대허용하중															
		작업대하단	난간1·2단																	
case 1 강관틀 비계	4.5kN/m ² (450kg/m ²)	3.5kN/m (350kg/m)	0.6kN/m (60kg/m)																	
case 2 시스템 비계	5.0kN/m ² (500kg/m ²)	3.0kN/m (300kg/m)	0.55kN/m (55kg/m)																	
case 3 이동식 비계	5.5kN/m ² (550kg/m ²)	2.5kN/m (250kg/m)																		
																				

※ 위 내용과 상이한 구조인 경우 별도의 구조검토를 통해 구조 안전성 확인 후 사용가능함

□ 관람석

구 분		점검내용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설치 중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 작업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는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 고소작업자는 안전대 걸이를 걸고 작업을 실시하는가? ※ 고소작업 :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작업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 안전대 걸이를 걸 수 없을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생명줄)를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하는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중량물 취급	- 자재 및 장비 인양은 적정하게 실시하는가?			
	안전 난간	-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은 설치하는가?			
	바닥 상태	- 이동통로 및 계단에는 미끄러짐 방지 조치가 되어있는가?			
	설치 상태	- 시공상 세도와 일치되게 설치되고 있는가?			
	지반 상태	- 지반 상태는 견고한가?			
	받침철물	- 지반침하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인 깔목 또는 깔판을 설치하였는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 받침철물과 지반사이는 밀착되게 설치되었는가?			
		- 조절형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1/3 이상이 지지대에 삽입되어 설치되었는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			
	수직 및 수평	- 구조물은 수직 및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흔들림	- 구조물은 흔들림 방지 조치를 실시하였는가?			
	체결부	- 구조물 각 부재의 연결부위는 견고하게 체결되었는가?			
작업발판	- 발판은 이탈방지 조치를 실시하였는가?				
안전난간	-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 조치를 실시하였는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설치종료 및 유지관리	관람석	-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는?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 관람석 하부구조물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는?			
		-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는?			
		- 모서리 방호조치는 하였는가?			
		- 부재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는?			
		- 부착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는?			
해체	해체계획	- 해체 시 전도방지 조치를 실시하였는가?			
		- 해체는 설치의 역순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 텐트 구조물

구 분		점검내용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설치 중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 작업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는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 고소작업자는 안전대 걸이를 걸고 작업을 실시하는가? ※ 고소작업 :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작업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 안전대 걸이를 걸 수 없을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생명줄)를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하는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중량물 취급	- 자재 및 장비 인양은 적정하게 실시하는가?			
	전도 방지	- 텐트 구조물의 전도방지 조치는 실시하는가?			
	설치 상태	- 시공상세도와 일치되게 설치되고 있는가?			
	지반 상태	- 지반 상태는 견고한가?			
	기초부	- 베이스와 지반사이는 밀착되게 설치되었는가?			
		- 텐트 고정용 앵커볼트의 수량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가?			
		- 텐트 고정용 앵커볼트의 매립깊이는 적정한가?			
	수직 및 수평	- 텐트 구조물은 수직 및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가?			
	흔들림	- 텐트 구조물은 흔들림 방지 조치를 실시하였는가?			
		- 와이어로프의 설치각도(60° 이내)는 적정한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			
		- 지지물(말뚝, 캔틀리지)의 매립깊이 또는 중량은 적정한가?			
	체결부	- 텐트 구조물 각 부재의 연결부위는 견고하게 체결되었는가?			
막지(천막)	- 막지 간 체결은 견고하게 하였는가?				
배수로 확보	- 우천 대비 배수로 확보는 하였는가?				
설치종료 및 유지관리	텐트 구조물	-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는?			
		- 텐트 구조물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는?			
		-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는?			
		- 배수 상태는 양호한가?			
		- 텐트 구조물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는?			
		- 텐트 내부로 빗물 유입은 되지 않는지?			
해체	해체계획	- 해체 시 전도방지 조치를 실시하였는가?			
		- 해체는 설치의 역순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2. 소방시설 분야

구 분		점검내용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소 방 분 야	소화기	- 수동식 소화기는 배치도에 따라 정위치에 설치하였는가?			
		- 안전핀, 호스, 노즐의 부착 상태 및 노즐의 이물질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오래된 소화기의 사용가능 여부 (약제가 굳지 않았는지, 외관상 부식 및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를 확인하였는가?			
		- 지시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를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옥내 소화전	- 소화전함 표면에 “소화전” 표시와 함께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이 부착되었는가?(외국어 병기)			
		- 소화전함 주변 장애물의 비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위치표시등의 작동을 확인하였는가?			
		- 가압송수장치 기동 여부에 따른 기동표시등의 점등/소등을 확인하였는가?			
		- 방수구와 호스 및 노즐의 연결 상태는 확인하였는가?			
	화재 안전, 긴급상황 대응	- 위험물질 및 화기는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 피난통로 내 판매행위 및 물건적치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소방차량 근접배치(장애물 등)가 가능한지 확인하였는가?			
		- 긴급상황 발생대비 화재·구조·구급 통로를 확보하였는가?			
		- 응급의료장비(자동제세동기 등)비치 및 의료진 배치는 적정한가?			
		-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 발생 시 침수 및 고립상태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행사장 주변 소방출동로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계획은 수립하였는가?			

3. 전기시설 분야

구 분	점검내용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전 기 분 야	인입구 배선 (육안점검)	- 규격 전선을 사용하였는가?			
		- 전선 접속 상태는 양호한가?			
		- 전선 피복의 손상 여부는 확인하였는가?			
		- 배선공사는 적정하게 실시하였는가?			
	옥내배선 (옥외, 옥측 배선 포함) (육안점검)	- 규격 전선을 사용하였는가?			
		- 전선 피복의 손상 여부는 확인하였는가?			
		- 배선공사는 적정하게 실시하였는가?			
		- 비닐 코드선 사용 및 문어발 배선 사용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누 전 차 단 기	- 누전차단기 적정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열화 및 손상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개 폐 기 (차단기 포함)	- 개폐기의 적정설치 및 설치위치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개폐기의 열화 및 손상은 없는가?			
		- 정격퓨즈를 사용하였는가?			
		- 개폐기의 결선은 없는가?			
	비상전원 설비	- 정전시 비상전원확보(비상발전기, UPS) 및 정상운전이 가능한가?			
		- 정전시 비상전원설비 연동상태는 양호한가?			
		- 비상발전기 축전지의 충전상태는 양호한가?			
		- 비상발전기 무보수용 축전지의 교체주기는 적정한가?			
	배 전 반	- 배전함 커버손상 및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의 밀봉은 양호한가?			
	부하설비	- 전기기계기구 금속제 외함 접지 및 접지용 콘센트 사용은 적정한가?			
조명시설	- 조명탑 등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상태는 양호한가?				

4. 가스시설 분야

구 분	점검내용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가 스 분 야	현장안전 관리상태 검 사	- LPG용기의 실외에 보관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LPG용기의 전도방지 조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LPG용기 주위에 화기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배관 부식 및 호스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T형 호스 사용 및 호스길이 3m 이내 여부 확인하였는가?			
		- 배관, 호스의 연결부의 가스누설 여부를 점검하였는가?			
		- 중간밸브 고정은 견고하게 하였는가?			
		- 가스누출 경보기와 자동차단 장치 적정설치 및 연계작동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이동식 버너 적정불판 사용여부 및 부탄가스 사용 관리 상태는 확인하였는가?			
		- LPG 공급업체와 안전공급계약 체결 여부는 확인하였는가?			
		- 가스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표어 부착은 실시하였는가?			
	- 행사장 내 애드벌룬 설치 시 주입가스(헬륨가스) 사용 여부				

5. 유기시설 · 유기기구 분야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유기 시설 · 유기 기구	운영 계획	-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조립도면과 설치상태가 일치하는가?			
		- 설치된 유기기구 수에 따른 안전 관리자가 선임되었는가?			
	안전시설	- 유기기구 주변 안전매트 및 안전 펜스는 설치되어 있는가?			
	운전	- 운전조작 및 비상 조작 장치에는 이상이 없는가?			
	주행형 기구	- 제도, 주로는 균열·변형이 없으며 접합상태가 양호한가?			
		- 기구 내 안전벨트의 상태는 양호한가?			
	물놀이 장치	- 슬라이드, 파도풀 등 급수 및 배수장치, 착지부에는 이상이 없는가?			
	공기 주입식 기구	- 공기막 높이가 6m 이상일 경우 붕괴방지 지지구조물을 설치하였는가?			
		- 재료에 구멍 및 훼손 부위는 없는가?			
		- 공기 누수에 대한 이상은 없는가?			
- 공기 주입장치 주변에는 접근방지장치가 되어있는가?					

6. 불꽃놀이

공종 구분	공 종 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1. 공통사항	○ 불꽃 유효기간 및 제조년 월 일 확인	
	○ 불꽃 놀이주변 마른풀, 짚 등 인화성 물질 확인	
	○ 행사장 주변환경 및 동선 확인	
2. 행사진행 시설	○ 폭죽기의 파손 및 작동상태	
	○ 행사진행용 차량관리	
	○ 불꽃 점화용 받침대 고정상태	
	○ 화재위험 주변 소화기 비치유무	
	○ 성냥 및ライター 등 관리유무	
	○ 폭죽의 불량 및 손상유무	

7. 풍등 행사

공종 구분	공 종 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1. 공통사항	○ 주변 환경 화재 및 화기사용 위험성의 유무	
	○ 행사 참여자 동선의 확인	
	○ 기상상태 및 바람의 방향 확인	
	○ 행사 계획 및 심의유무 확인	
	○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현황	
	○ 안전관리요원 안전교육 유무	
2. 주요사용시설	○ 행사지원 차량 안전관리	
	○ 가설 전기시설물 누전차단기 설치	
	○ 안전표지판 설치유무	
	○ 행사진행 본부 관리상태	
	○ 무전기 등 통신장치 작동상태	

※ 점검리스트는 축제 유형·축제장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